

-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-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551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. 10. 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양, 비만 등 분야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, 전문인력 교육·훈련,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
- 나.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 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제2항
 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제1항의 2
 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2조
 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~제6조
 -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[보건복지부]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영양, 비만 등 13개 분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
-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, 인력교육, 성과관리 등 업무 추진시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,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○ 위탁범위 :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전반

○ 위탁사무

-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
-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 지원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·훈련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원
- 기타 대구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

라.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개요

- 근거 :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2
- 운영 : 17개 시·도별로 운영
- 구성 : 지원단장, 분과별 위원(관련교수 등), 연구원 등
- 역할 :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, 인력교육, 성과관리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(2019년 예산기준)

- 소요예산 : 민간위탁금 143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
-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금 액 | 산출근거 | 비고 |
|------|---------|--|----|
| 합 계 | 143,000 | | |
| 인건비 | 93,006 | · 인건비 93,006 - 책임연구원, 연구원 등 | |
| 운영비 | 37,994 | · 운영비 37,994 - 수용비, 공공요금, 관리비 등 | |
| 여비 등 | 12,000 | · 여비·업무추진비 12,000 - 관내·외 출장비, 월례회의, 워크샵 등 | |

*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

아. 2019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('19. 9. 24) 심의결과 : 적정(신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1

나.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 2

[붙임 1]

관 련 법 령

1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 지역보건법

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3 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
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2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

※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 [보건건강과-2124호('19.1.16)]

-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(계획서 24페이지)

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5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6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[보건복지부]

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

부록 5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

가. 개요

■ 운영 목적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
-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가 중심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
- 지역사회 중심 민·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반 구축

■ 운영 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
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로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 (이하 생략)

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
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로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1.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 2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
 3.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 5.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
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, 실비보조,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운영 기본 방향

- (운영 주체) 시도(광역자치단체의 장)
- (운영 방식) 시도가 지원단을 ① 직접 구성·운영하거나, ② 관련 대학·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
 - 기존 사업별로 추진하던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상황에 따라 기술지원 조직 통합 추진가능
 - 시도 내 '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부서' 공동 운영 가능

[붙임 2] 추진계획

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(신규) 추진계획

“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”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지역보건법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제2항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제1항의 2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2조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~제6조
-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[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-9124(‘18.12.31.)]

II 필요성

-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영양, 비만 등 13개 분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
- 기존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해오던 사업이지만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, 타 시도 사례,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,
-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, 인력교육, 성과관리 등 업무 추진시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,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III 지원단 현황

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개요

- 목적 :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 기반 구축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

※ 통합건강증진사업 개요

-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, 만성질환예방,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추진
- 13개 분야 : 금연, 절주, 신체활동, 영양, 비만, 구강, 심뇌혈관질환, 한의약, 아토피
· 천식, 여성어린이, 치매관리, 재활, 방문건강관리

- 근거 :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2
- 운영 : 17개 시·도별로 운영
- 구성 : 지원단장 1명, 5개분과별 위원 26명(관련교수 등), 연구원 4명
*19년 기준
- 역할 :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, 인력교육, 성과관리 등
- 실적 *18년 기준
 - 기술지원 : 보건소 현장방문·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자문 8회, 워크숍 1회
 - 인력교육 :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원 및 전문인력 교육계획 및 운영 16회
 - 성과관리 : 보건소 계획평가 1회, 성과평가 1회, 간담회 1회, 사례공유회 1회



■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현황

○ 2005년 6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관련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

- 1차 : 2005.06.29.~2006.03.02. (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차 : 2006.04.03.~2014.02.02. (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)
- 3차 : 2014.03.17.~2015.02.28. (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)
- 4차 : 2015.03.02.~2016.12.31. (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)
- 5차 : 2017.01.01.~2017.12.31. (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)
- 6차 : 2018.01.02.~2019.12.31. (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)

※ 타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현황

-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시·도에서 전체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음

| 연번 | 시·도명 | 운영방식 | 위탁기간 | 위탁기관 | 사업비 |
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서울 | 위탁 | 3년 |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| 280,000천원 |
| 2 | 부산 | 위탁 | 3년 |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| 160,380천원 |
| 3 | 인천 | 위탁 | 3년 | 인천광역시의료원 | 85,000천원 |
| 4 | 광주 | 위탁 | 2년 |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| 140,000천원 |
| 5 | 대전 | 위탁 | 2년 |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| 110,000천원 |
| 6 | 울산 | 위탁 | 3년 |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| 60,000천원 |
| 7 | 세종 | 위탁 | 3년 |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| 70,000천원 |
| 8 | 경기도 | 위탁 | 3년 |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| 312,000천원 |
| 9 | 강원도 | 위탁 | 2년 |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| 190,000천원 |
| 10 | 충청북도 | 위탁 | 3년 |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| 97,000천원 |
| 11 | 충청남도 | 위탁 | 3년 |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| 180,000천원 |
| 12 | 전라북도 | 위탁 | 3년 |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| 180,000천원 |
| 13 | 전라남도 | 위탁 | 2년 |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| 150,000천원 |
| 14 | 경상북도 | 위탁 | 3년 |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| 212,000천원 |
| 15 | 경상남도 | 위탁 | 2년 |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| 190,000천원 |
| 16 | 제주 | 위탁 | 3년 |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| 128,000천원 |

■ 보건복지부 지침 「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」

- 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·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※ 시·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

- 운영방식 : 시·도가 지원단을 직접 구성·운영하거나 관련대학,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

IV 세부추진계획

1. 위탁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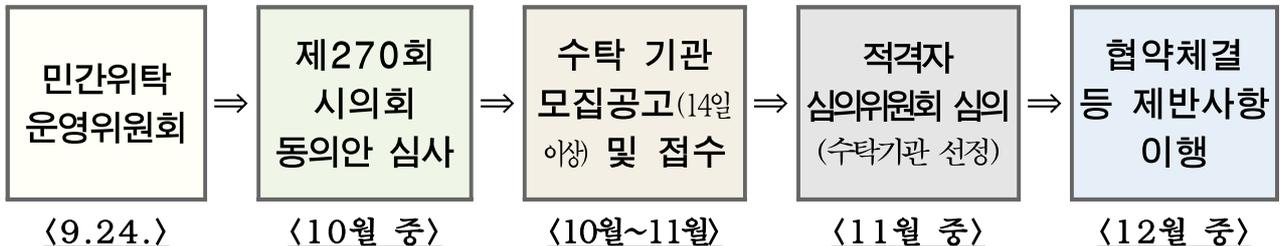
- 위탁범위 :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 (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기관 민간위탁
- 위탁예산 : 143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 *19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
- 위탁사무

-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
-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 지원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·훈련
-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원
- 기타 대구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

■ 위탁조건

- 수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사업(국비 50%, 시비 50%)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- 위·수탁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

■ 위탁절차



2. 수탁기관 선정

- 공고기간 : 2019. 10월중 (14일 이상)
- 공고방법 :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 - ※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(5일 이상)
- 선정방법 :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·결정 (12월중 개최예정)
- 응모자격
 -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경력 및 건강증진 분야 교육 시행 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
-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
 - 구 성 : 6 ~ 9인 이내 (위원장 포함)
 - 위 원 장 :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
 - 위 원 :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수,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
 - 위촉방법 : 공개모집(공고)
 - 심사기준
 -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등 경험과 전문성
 -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
 -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
- 위탁기관 선정
 - 2개 이상 기관 접수시 :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한 1개 기관 선정
 - 1개 기관 접수시 : 위탁단체 적격여부 심사

3. 운영위탁비 산정(안)

■ 연간 운영 위탁비 *19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세목 | 예산액 | 산출내역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인건비 | 소계 | 93,006 | |
| | 보수 | 63,006 | 연구원 3명 |
| | 기타직보수 | 9,600 | 책임연구원 1명, 연구원 1명 |
| | 기타인건비 | 20,400 | 지원단 위원 자문수당 등 |
| 운영비 | 소계 | 37,994 | |
| | 일반수용비 | 20,863 | 교육비, 평가대회, 홍보물 등 |
| | 공공요금 및 제세 | 240 | 우편요금, 전화요금 등 |
| | 임차료 | 2,000 | 행사장 및 회의실 |
| | 재료비 | 2,400 | 자료입력분석비 |
| | 복리후생비 | 5,341 | 상근 연구원 2명 |
| | 기타운영비 | 7,150 | 기타관리비 |
| 여비 | 소계 | 4,000 | |
| | 국내여비 | 4,000 | 관내 및 관외 출장비 |
| 업무추진비 | 소계 | 8,000 | |
| | 사업추진비 | 7,000 | 월례회의, 워크샵 등 |
| | 학회참석비 | 1,000 | 관련학회 등 |
| 전체 총액 | | 143,000 | |

※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

V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사 : 2019. 10월중
-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 : 2019. 10월중
-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·수탁기관 선정 : 2019. 11월중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19. 12월중